

국 부 총 비 영 정 포 영 심

국무총비 지시 제 13호 (70-2011) 1977. 11. 1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지시

1. 근래 국민경제의 급속한 신장과 산업 특히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양식 및 경제활동 양상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생활의 각분야에 걸쳐 각종 위험물의 취급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위험물들은 안전한 관리와 과학적인 취급을 할때에만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며, 취급을 소홀히 할때에는 사소한 취급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금번의 이리역구내 화약 폭발사고가 우리에게 다시한번 뼈저린 교훈으로 남겨준 바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이에대비하여 대형 사고(대형 화재 포함)의 강력한 방지대책의 강구실시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다음의 제사항을 지시하니 각 부처는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 부처는 각종안전과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단시일 내에 재점검하고 현행제도 및 법규상의 미비점 및 문제점등을 철저히 파악할 것.

2. 각 부처는 소관 산업 관여업무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 및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교육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용 규제 필요하면 새로운 법규의 제정도 추진 할 것.
3. 각 부처는 관계법령의 정비에 앞서 우선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행정적인 수칙등을 확립 제정비함과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제도의 확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4. 각 부처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및 취급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계법규의 위반이나 직무태만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서정색신의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리도록 할 것.
5. 각 부처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영기업체의 장 및 대기업체의 장을 소집하여 대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수칙의 시행을 엄중히 시달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 할 것.
6. 행정개혁위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작업과 병행하여 안전관리 관계법령의 정비작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각 부처는 문화공보부와 협조하거나 또는 소관업무의 집행을 통하여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각종사고의 미연 방지에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국 부 총

수신처: 가(8, 10-46)
나(1).

